

추락방지용 안전시설(고소작업대 임차료) 보조지원 별도지침

□ 추진배경

- 소규모 건설현장의 고소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고소작업대(시저형, 굴절형, 차량탑재형) 임차료에 대한 보조 지원 실시

□ 지원대상 및 조건

- (지원대상)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고소작업 보유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

* 제외대상: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·건축공사업)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, 산재보험미가입(체납) 사업주 등

- (지원한도) 공사금액에 따라 공단 판단금액의 50% 또는 65% 지원하되, 건설현장 당 최대 3,000만원* 한도로 지원

* 당해연도 “추락방지 안전시설” 보조한도 내 운영(시스템비계·안전방망·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금액 포함)

품목	사용기준	현장당 지원 한도	동일사업주당 지원한도	공사규모별 보조지원비율
고소작업대 임차료 (시저형, 굴절형, 차량탑재형)	· 제조연월 5년 미만 · 안전인증품 · 안전검사합격품+ 운전원 유지력	최대 3,000만원 · 보조금 조건표에 따라 정액지급	· 20억원미만 9개소 · 20억원이상 3개소	· 20억원미만 65% · 20억원이상 50%

* 고소작업대 종류 및 규격(용량·작업높이), 임대기간에 따른 보조금 조건표상의 일정액으로 산정

- (지원품목) 고소작업대 임차료(시저형, 굴절형, 차량탑재형)

종 류	시저형, 굴절형	차량탑재형
사 진		
주 사용장소	실내·외	실외
주 용도	지붕, 판넬공사 등	건물 외벽공사 등
방호장치	과부하방지장치, 과상승방지장치 등	과부하방지장치, 아웃트러거 등
법적 규제	안전인증(○), 안전검사(×)	안전인증(○)·안전검사(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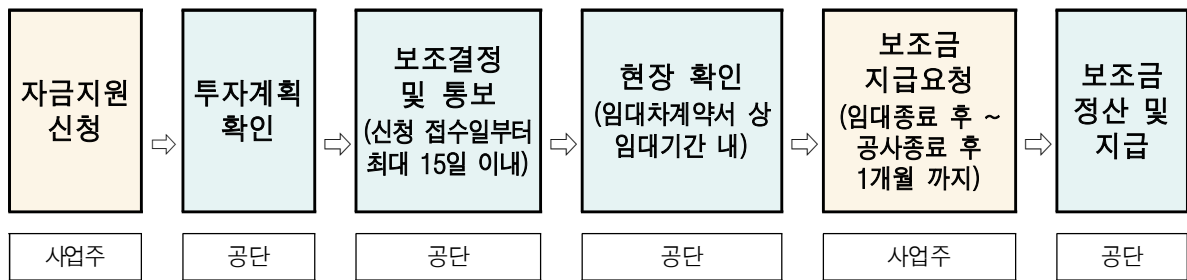
○ (품목코드) “B” 코드, 12-05-226, 고소작업대 임차료로 입력

-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(고소작업대 임차료): 1205226
- 자금신청 입력 시 설비품명코드 외 규격(시저형, 굴절형, 차량탑재형) 선택 입력 필수

□ 절차별 추진내용

○ (추진절차)

[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지원 추진절차]



○ (자금신청) 사업장에서 자금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 제출

- 규정 별지 제1·2호서식 작성하고 해당하는 첨부서류 제출([별첨2] 작성예시 참조)

○ (계획확인)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등 첨부서류 검토 및 확인

-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 1부
- ② 현장전경 사진 및 장비 임대차계약서(사본) 1부
- ③ 고소작업대 사용기준 확인 서류* 1부
- ④ 건설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(해당시) 1부
- 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사본(해당시) 1부
-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(개인공사 제외) 1부
- ⑦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
- ⑧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(공단담당↔사업주) 1부
- ⑨ 산재보험 완납여부는 「ERP>건설>재정지원>조회>산재보험 완납확인」에서 확인, 결과 인쇄·편철

* 장비에 부착된 명판의 **제조연월** 확인(생산된 지 5년 미만 장비에 한함), 고소작업대 **안전인증** 합격필증 및 **안전검사** 합격증명서, **운전원 유자격**(운전자격증 또는 조종교육 이수확인서) 확인

○ (보조결정 및 통보)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심사위원회 생략하고 지급대상자 결정 가능(차기 보조금 심사위원회 시 결정 결과 보고)

- 조건표*에 따라 정액 지급(표준단가 × 보조지원 비율(0.5~0.65))
 - * 별첨1 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금액 조건표 및 표준단가 참조
 - 실거래금액과 고소작업대 임차료 표준단가 중 작은 값으로 적용
 - 보조지원비율은 공사 규모별 적용(20억미만 65%, 20억이상 50%)
- 고소작업대 사용일자별 작업 시 증빙 사진 촬영(일시 및 GPS표시) 및 향후 공단 현장확인 등 안내
- 결정통보 내용에 ❶사용일별 증빙 사진을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만 보조금 감액 없이 지급됨을 안내하고, ❷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(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(기계등 대여자의 조치), 101조(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)를 반드시 준수토록 안내

☞ (대여자 조치)

1. 고소작업대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거나 정비
2. 고소작업대를 대여받는 자에게 ①기계 성능 및 방호조치 내용, ②기계 특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, ③기계 수리·보수·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, ④기계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,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, 제조일에 관한 서면 발급

☞ (대여받는자 조치)

1. 고소작업대 운전원의 자격 확인
2. 고소작업대 운전원에게 작업내용, 지휘계통, 연락 및 신호방법, 운행경로, 제한 속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을 주지

○ (현장확인)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기간 내에 불시로 현장 방문 (1회)*하여 고소작업대 사용여부 확인

- * 단, 고소작업대 사용일자가 주말 등 휴일에만 사용하거나 임대기간이 10일 미만으로 불시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동영상 촬영(1분)을 요구하여, 패트를 점검 또는 최종 정산 시 동영상과 현장을 대조하여 실사용 여부 확인

☞ (절차개선) 일선기관 담당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, 기상상황 등으로 사업장 통보 일정(고소작업대 임차 일정)의 변동이 심하고 적기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

↳ 사업장의 현장확인 요청 없이, 고소작업대 임대차기간 내에 불시로 현장 방문하여 확인토록 절차 간소화

- 사용일별 증빙사진(일시 및 GPS표시)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장비의 실 사용 여부 확인
-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(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(기계등 대여자의 조치), 101조(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) 준수 확인

✎ (대여자 조치)

1. 고소작업대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거나 정비
2. 고소작업대를 대여받는 자에게 ①기계 성능 및 방호조치 내용, ②기계 특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, ③기계 수리·보수·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, ④기계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,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, 제조일에 관한 서면 발급

✎ (대여받는자 조치)

1. 고소작업대 운전원의 자격 확인
2. 고소작업대 운전원에게 작업내용, 지휘계통, 연락 및 신호방법, 운행경로, 제한 속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을 주지

- 향후 보조금 지급 시 실 사용일수 인정 기준,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출 방법 등 안내

○ (보조금 지급요청) 임대기간 종료 후부터 공사종료 후 1개월까지 보조금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
- ◆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
- ◆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사업주 및 임대·설치업체) 1부
- ◆ 입금 회당통장 사본(사업주) 1부
- ◆ 입금증빙서류(부가세를 포함한 실투자금액 전체를 입금한 입증서류)
- ◆ 전자(세금)계산서 사본 1부
- ◆ 임대기간 내 사용일자별 작업 시 촬영된 증빙 사진*(파일 등) 1부

* 단, 휴일에 사용 또는 10일 미만 단기 사용 시 1분 간의 동영상 추가 제출

○ (보조정산 및 지급) 제출서류 검토하여 고소작업대 실 사용일수 등 최종 확인, 보조금 정산 및 지급

- (보조금액 정산)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 내 실 사용일수 기준 적용
- (실 사용일수 확인방법) 증빙 사진 또는 동영상 제출 일수만 인정*

* 임대기간을 1개월(월대)로 계약한 경우에는, 최종 정산 시 증빙 사진 미제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삭감한 후 지급

□ 기타 사항

-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 「태양광패널 설치 사업장 지원(고소작업대 및 추락방지망) 지침」을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 지원 지침과 통합 운영함
-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·규칙, 사업계획 추진지침(추락방지용 안전시설) 및 업무수행 일반 기준을 준용함

<별첨1> 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금액 조건표 및 표준단가

■ 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금액(부가세별도) 조건표

○ [공사금액 20억원 미만] 규격 및 임대기간별 보조금(보조지원비율 65%)

☞ 시저형 고소작업대

[단위: 원]

규격 \ 임대기간	1일	1개월
6m, 7.5m	26,000	195,000
8m	32,000	260,000
10m	39,000	341,000
12m	48,000	390,000
14m	65,000	520,000

☞ 굴절형(디젤엔진식) 고소작업대

[단위: 원]

규격 \ 임대기간	1일	1개월
12m	139,000	1,158,000
16m	185,000	1,495,000
18m	211,000	1,569,000

☞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

[단위: 원]

규격 \ 임대기간	1일	1개월
1~3.5ton	357,000	7,150,000
5ton	422,000	8,775,000
8ton	585,000	11,050,000

* 임대업체의 고소작업대(시저형, 굴절형) 임대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, 운반비 추가지급 가능(실비로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받아 보조지원비율 65%를 적용하여 정산)

○ [공사금액 20억원 이상] 규격 및 임대기간별 보조금(보조지원비율 50%)

☞ 시저형 고소작업대

[단위: 원]

규격 \ 임대기간	1일	1개월
6m, 7.5m	20,000	150,000
8m	25,000	200,000
10m	30,000	262,000
12m	37,000	300,000
14m	50,000	400,000

☞ 굴절형(디젤엔진식) 고소작업대

[단위: 원]

규격 \ 임대기간	1일	1개월
12m	107,000	891,000
16m	143,000	1,150,000
18m	162,000	1,207,000

☞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

[단위: 원]

규격 \ 임대기간	1일	1개월
1~3.5ton	275,000	5,500,000
5ton	325,000	6,750,000
8ton	450,000	8,500,000

* 임대업체의 고소작업대(시저형, 굴절형) 임대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, 운반비 추가지급 가능(실비로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받아 보조지원비율 50%를 적용하여 정산)

고소작업대 임차료 표준단가(부가세별도)

(단위 : 원)

번호	구분	규격(용량 · 작업높이)	임대기간	표준단가
1	시저형	6m, 7.5m	1일	40,000
			1개월	300,000
		8m	1일	50,000
			1개월	400,000
		10m	1일	60,000
			1개월	525,000
		12m	1일	75,000
			1개월	600,000
		14m	1일	100,000
			1개월	800,000
2	굴절형 (디젤엔진식)	12m	1일	214,500
			1개월	1,782,500
		16m	1일	286,000
			1개월	2,300,000
		18m	1일	325,000
			1개월	2,415,000
3	차량탑재형	1~3.5ton	1일	550,000
			1개월	11,000,000
		5ton	1일	650,000
			1개월	13,500,000
		8ton	1일	900,000
			1개월	17,000,000

※ 임대업체의 고소작업대(시저형, 굴절형) 임대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, 운반비 추가지급 가능(실비로 지급하되,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)

210mm×297mm(일반용지 80g/m²)

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

■ 사업장명: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설비명	모델/규격 견적업체	수량 단가	임대기간 (일)	소요금액 (a+b)	자체부담 금액 (a)	보조신청 금액(b)	투자개시 예정일	투자완료 예정일
계	-	-	-	3,000	1,052	1,948	'24.7.1~	~24.7.31.
고소작업대 임차료	차량탐재형/3.5ton	1대	7.9~ 7.12. (4일)	2,200	772	1,428	'24.7.9.	'24.7.12.
	○○건설중기	550						
고소작업대 임차료	시저형/ 8m	2대	7.1~ 7.31. (17개월)	800	280	520	'24.7.1.	'24.7.31.
	○○렌탈	400						

주1) 소요금액(a+b) : 자체 부담금액(a) + 보조신청금액(b)

주2) 자체부담금액(a) :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

주3) 보조신청금액(b)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·설치·해체·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한 금액

주4)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·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·설치·사용하는 시기이며,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·완료하는 시기를 말함

■ 첨부서류

서 류 명	클린사업장 조성사업 (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)		추락방지용 안전시설	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	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
	온라인(전산)	오프라인(직접)			
① 견적서(원본) -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: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	○	○	○	○	○
② 상품설명서(카타로그)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- 건설업 :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-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: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 - 건강일터 조성지원: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	○	○	○	○	○
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	○	○	○	○
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(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)	×	×	○	×	×

주)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